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371호
- 나. 제 안 자 : 고광민 의원(찬성자 16명)
- 다. 제 안 일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은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요청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28조 제5항 제1호 신설)
- 나. 시장은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28조 제5항 제2호 신설)

##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나.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28조에 시장이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와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위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 ④ (생략)</p> <p><u>&lt;신설&gt;</u></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 요청</u></p> <p><u>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u></p>

## 나. 검토 내용

### (1) 관련 법에서의 규정사항

- 현행 조례 제28조는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와 함께 시장이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 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대부업 및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8조제5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호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붙임1 참고)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전기통신업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요청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한 안 제28조제5항제1호는 요청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사항 및 요청권자〉

	관련 법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사항	요청권자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불법대부업 관련 금지 광고물	사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 금지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권유하는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사기로 정보수집을 하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자금 유통화수 알선 행위, 형법상 도박 사기 성매매 범죄	수사기관의 장

- 「청소년보호법」 제19조제1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같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설치·부착 또는 배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옥외광고물법」 제10조1)에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시장등은 위반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되어있으며 현행 조례 제31조2)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청소년 유해 불법 이동광고 물에 대해 구청장에게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2) 불법 대부광고 행위 차단 업무(안 제28조제5항제1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불법 유동광고물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임
- 현행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대부업수사팀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수사하고 불법대부 광고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sup>3)</sup>
- 서울시 누리집 민생사법경찰의 직무범위<sup>4)</sup>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수사, 미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 수사를 추진해왔으며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자 검거,

### 3) 민생사법경찰단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

4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 수사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행정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서울시 누리집 민생사법경찰 직무범위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49587>)

전화번호 제공 중지 요청 등의 업무<sup>5)</sup> 또한 추진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 ⑩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 5. (생략)

② ~ ③ (생략)

###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 **9. 전단**

② (생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및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

5) 민생사법경찰단(대부업수사팀)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수거하여 해당 전화번호 및 등록번호에 대하여 관할자치구에 광고물 신고여부를 확인 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업체인 경우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공정경제담당관(공정거래팀)에 전화번호 중지요청을 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행정기관별 1개 부서에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음



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를 위한 조항 내 이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처리 측면에서 실익은 크지 않다 할 것임

- 다만, 현행법 상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등록 불법 대부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3)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 차단 업무(안 제28조제5항제2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현행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며, 민생사법경찰단(보건복지수사팀)에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설치·부착·배포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수행 하고 있음
- 다만, 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자 수사와 성매매전단지 통화차단(대포킬러)으로 불법영업을 원천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보호법」

제44조(수거·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5항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구청장에게 위반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권자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조례상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 현행 조례 제31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임받은 ‘구청장’에게 시장이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 있음
- 이미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대부광고 차단과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대한 단속이 이행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안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p><b>「전기통신사업법」</b>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1. 「<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p>	<p>「<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는 <u>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u>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u>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u>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약칭: <u>대부업법 시행령</u>)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u>시·도지사</u> 2. <u>검찰총장</u> 3. <u>경찰청장</u> 4. <u>금융감독원장</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u>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u></p>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  
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  
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  
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  
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생략)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  
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생략)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  
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  
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략)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  
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  
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  
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들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p>「<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p> <p>① <u>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u>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3. 「 <u>전자금융거래법</u> 」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p>「<u>전자금융거래법</u>」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p> <p>① <u>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4.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p>「<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p> <p>① <u>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p> <p>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u>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u>을 말한다.</p>

<p>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p> <p>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li> <li>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li> <li>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li> </ol>	
---	--	--